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4년 월 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“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의거 기획관리실에 설치된 「도정혁신기획단」을 「혁신분권담당관」으로 전환하고
-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 직속 「총무과」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실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기획관리실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” 을
 - “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” 으로 조정
-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 조정
 - “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서관리에 관한 사항” 신설
 - “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” 신설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0.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

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 제1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1호로 한다.

1. 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2. 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<u>10.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</p> <p>....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0. 행정혁신,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항</u></p>
<p>제7조(자치행정국)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1. ~ 9. (생략)</p>	<p>제7조(자치행정국)</p> <p>.....</p> <p><u>1. 각종 의전, 행사, 보안, 문서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공무원인사, 교육고시, 복무 및 후생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~ 11. (생략)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2조 (행정기구)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, 시·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·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구의 설치·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제7조 (실·국·본부등 기구의 설치) ①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 및 과·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 및 사무분장을 함에 있어서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